



서 울 고 등 법 원

인 천 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 (인천)2025누1012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
원고, 항소인 1. A

2. B

3. C

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○○

피고, 피항소인 ○○광역시 ○○구청장

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5. 5. 22. 선고 2024구합55581 판결

변 론 종 결 2025. 9. 30.

판 결 선 고 2025. 11. 4.

주 문

1.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22. 7. 11. 원고들에게 한 취득세 40,196,500원(가산세



포함), 농어촌특별세 3,445,700원(가산세 포함)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살펴보더라도,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.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7쪽 2줄의 "E, N, P는"부터 7쪽 4줄의 "또한"까지 부분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.

2. 결론

제1심판결은 정당하다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정○○

판사 여○○

판사 신○○